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07157 이혼 및 재산분할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2. 2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 10.경 횡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횡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0.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 10. 8.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함.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의 인정근거란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불인정이유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분할대상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전인 1992. 6. 2. 취득한 점, 원고의 부모님이 2000. 4. 21. 1,800만 원을 지원해준 점, 원고가 2003.경부터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정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521,251,390원 $\times$ 45%=234,563,125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억 3,5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윤재남